

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 (알림)

● 체류카드로 바꾸셨습니까?

교체 전



외국인등록증명서

교체 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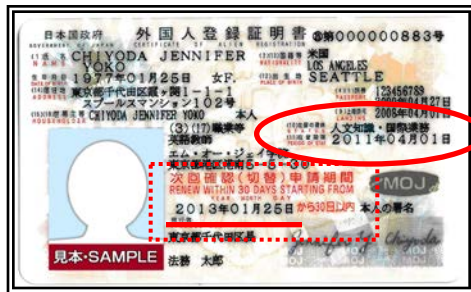
체류카드



교체

- 1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되어 외국인등록증명서는 **체류카드**로 바꾸셔야 합니다.
- 2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시는 외국인(이하 ‘중장기 체류자’라고 합니다.)은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 또는 그 지국이나 출장소(이하 ‘지방입국관리국 등’이라고 합니다.)에서 체류카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.(공항만 관할하는 지국이나 출장소는 제외합니다.)
- 3 유효기간의 만료일 직전에는 신청창구가 매우 붐빌 것으로 예상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바꾸시기 바랍니다.
교체 신청은 지금도 접수가 가능합니다.

○ 유효기간을 확인한다.



새로운 체류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으로

·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체류자격이

영주자

인 경우

·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체류자격이

영주자 이외

의 중장기 체류자인 경우

- (주1)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을 받은 경우, 최신 체류 자격 등은 증명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
 (주2) 16세 미만인 분에게는 보험증 크기(A5판)의 접이식 외국인등록증명서가 교부되었습니다.

영주자

인 경우

○ 새로운 제도 시행일(2012년 7월 9일) 당시에 16세 이상이었던 분

새로운 제도의 시행일(2012년 7월 9일) 당시에 16세 이상이었던 분이 소지하시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(2015년 7월 8일)까지 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.

체류카드로의 교체는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

- **체류카드 교부 신청** (상기 기간 내에 신청 가능)

또는

- **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** (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) 등으로 해주십시오.

○ 새로운 제도 시행일 (2012년 7월 9일) 당시에 16세 미만이었던 분

시행일 당시에 16세 미만이었던 분이 소지하시는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2015년 7월 8일까지 16세 생일을 맞는 분 → 16세 생일까지
- 2015년 7월 9일 이후에 16세 생일을 맞는 분 → 2015년 7월 8일까지

체류카드로의 교체는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

- **체류카드 교부 신청** (상기 기간 내에 신청 가능)

또는

- **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** (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) 등으로 해주십시오.

【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 】

대 상 자		유효기간의 만료일
16세 이상인 분		2015년 7월 8일
16세 미만인 분	2015년 7월 8일까지 16세 생일을 맞는 분	16세 생일
	2015년 7월 9일 이후에 16세 생일을 맞는 분	2015년 7월 8일

영주자 이외

의 중장기 체류자인 경우

○ 새로운 제도 시행일(2012년 7월 9일) 당시에 16세 이상이었던 분

새로운 제도의 시행일(2012년 7월 9일) 당시에 16세 이상이었던 분이 소지하시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체류기간의 만료일 또는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(2015년 7월 9일) 중 더 빠른 날까지 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.

이후 체류기간 갱신 신청 등에 의한 허가 시에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.

○ 새로운 제도 시행일 (2012년 7월 9일) 당시에 16세 미만이었던 분

시행일 당시에 16세 미만이었던 분이 소지하시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체류기간의 만료일, 2015년 7월 8일 또는 16세 생일 중 가장 빠른 날까지 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.

그 중에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이 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인 분은, 이후 **체류기간 갱신 신청 등에 의한 허가 시에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.**

그 이외의 분은 **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** (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(주) 신청 가능)을 해주십시오.

(주)2015년 7월 9일 이후에 16세 생일을 맞는 분은,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입니다.

【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 】

대 상 자		유효기간의 만료일
'특정활동'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(특정 연구활동 등에 의해 '5년'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은 분에 한합니다.)	16세 이상인 분	체류기간의 만료일, 또는 2015년 7월 8일 중 더 빠른 날
	16세 미만인 분	체류기간의 만료일, 2015년 7월 8일, 또는 16세 생일 중 가장 빠른 날
상기 이외의 분 (3개월을 넘는 체류기간이 결정된 분)	16세 이상인 분	체류기간의 만료일
	16세 미만인 분	체류기간의 만료일, 또는 16세 생일 중 더 빠른 날